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2/ 4 통권 176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10)
 - 이해상충 환경에서 경영의사결정 유의사항
-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 “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행진다
-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주택의 일부 지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분만 거주요건 적용됨 (p.11)

〈2026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 ①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9%에서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에서 22%, 3천억원 초과 24%에서 25%로 법인세율을 각 단계마다 1%씩 인상함(법인 55)
- ②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기부가능 기준소득(=결손차감후 당기손익-전액기부인정액)의 10%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기준소득의 20%에서 30%로 상향함(법인 24)
- ③ 배당성향, 배당금액증가 등 요건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상장사로 순이익의 40%이상 배당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각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20%, 3억원초과 50억원까지 25%, 50억원 초과 30%)(조특 104의27)
-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대부분 감면·세액공제규정 : 일몰 올해 25년 → 28년으로 3년 자동연장
- 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제작비용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조특법 25조의6)
- ⑥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조특법 25조의8)
- ⑦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시 손비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산입이 가능(조특 제28조의5)
- ⑧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허용(조특 136)
- 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금액을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추가 상향조정함(조특 126의2)
- ⑩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부가세법 60조3항,4항)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세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65호 / 주간 5호

2026. 2. 4.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829-7575
FAX:02)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2026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10) - 이해상충 환경에서 경영의사결정 유의사항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세금계산서 - 주류 위탁판매 문의 - 수출재화의 반품에 따른 매출 취소시 환율 적용 및 회계처리 문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6
매일절세재무요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시 세부담 변화 사례 - 달라지는 2025 연말정산 공제 혜택	8 9
직장인Survival	커리어 관점에서 현재 업무를 재해석하는 법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의미하므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보유기간에 한정하여 거주기간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재산-264, 2025.04.28) -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24, 2025.06.26)	11 12
세정뉴스와해설	국세청장,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법인세 직권연장 지시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주택의 일부 지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분만 거주요건 적용됨	11
세무정보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 "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행진다 -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돈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14 19 24 31 37 4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10)

- 이해상충 환경에서 경영의사결정 유의사항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시 이해상충이 있는 환경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가 해당 결정에 대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전체적 공정성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체적 공정성 기준은 거래가 내재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이다.

이해상충 환경에서는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전체적 공정성 기준에 따라 거래 공정성을 입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을 위한 핵심이다.

●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

이해상충 상황에서 적용되는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 기준의 요건은 크게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절차적 공정성 요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거래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거래의 적정성을 평가할 자문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거래에 대해 확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다수결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의 의사가 강요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내용적 공정성 요건

거래 가격이 유사 거래 가격 범위 내에서 공정해야 하며, 거래 조건 전체가 회사와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의 내재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기업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전체적 공정성 기준은 이해상충 거래에서 이사가 거래의 절차와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 전체적 공정성 판단 시 절차적 공정성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독립적 심사기구의 설치 : 이해상충 거래에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나 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이다. 이들은 거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거래 조건과 공정성을 검토한다.
- 충분한 정보와 분석: 거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단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소수주주 승인 (Majority of the Minority) : 소수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거래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강제나 부당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 거래 협상과정의 공정성: 거래 협상 시 이사의 주의의무 준수와 독립성 확보, 그리고 공정한 거래조건 마련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한 실행: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모든 관련자의 발언권, 존중, 중립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전체적 공정성 기준 적용 시 거래의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Q 법인이 사용하던 PC를 임직원에게 매각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법률)

부가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항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4항 ④

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A 법인의 자산을 매각(판매)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매각(판매)이라는 법적 형식이 없이 선물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무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 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개인적 목적보다는 판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Q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인 익월10일 이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세금계산서가 11월 13일에 발행되었고 11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잘못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 신고기간내에 수정되어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위탁판매 문의

- Q** 당사 영업장에서 와인을 와인업체에서 구매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와인회사의 일정 수량의 와인을 당사 영업장에서 먼저 판매하고, 한달 후에 판매된 수량만큼만 정상 매입처리 (세금계산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주세법 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 A** 주세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주류의 수입시 과세하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는 주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사의 영업장에서 귀사가 매입하지 않은 물품을 먼저 판매후 추후 매입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출재화의 반품에 따른 매출 취소시 환율 적용 및 회계처리 문의

- Q** 당사에서 미국에 있는 고객사에게 제품 매출 후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품 100개, 단가 100원
* 선적일 : 2024.10.31 환율 \$1,100.00
* 외화평가 : 2024.12.31 환율 \$1,150.00
* 반품일 : 2025.07.31 환율 \$1,200.00
※ 반품시 회계처리
(차변) 외상매출금 -11,500,000 (대변)매출 -11,000,000 , 외화평가이익 -500,000
* 수출재화의 반품시 최초 선적일 환율로 매출취소를 진행하고 25년 12월 31일 환율로 외화평가금액을 환원하는 회계처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A** 매출후 하자가 발생되어 최초의 매출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최초 선적시점에 반영한 매출을 취소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로는 주택취득준비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주택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주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는데 각각의 공제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연 4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로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이 해당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0(연 4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라고 한다.

주택임차차입금은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②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경우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하는 이자율(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100%를 연 6백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시 2천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1천8백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서 당해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며,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도 주택 분양권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함)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시 세부담 변화 사례

구분	기본세율(중과 배제)	2주택자 중과	3주택자 중과
양도가액	35억	35억	35억
취득가액	20억	20억	20억
기타 필요경비	1억2045만	1억2045만	1억2045만
양도차익	13억7955만	13억7955만	13억7955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277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과세표준	12억9427만	13억7705만	13억7705만
산출세액	5억1648만	8억2914만	9억6684만
지방소득세	5164만	8291만	9668만
총 납부세액	5억6813만	9억1205만	10억6533만
기본세율 대비 증가액	0	+3억4392만	4억9719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액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달라지는 2025 연말정산 공제 혜택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등
* 육아 위해 퇴직 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 재취업한 남성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주택마련저축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배우자도 공제	40%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한도 최대 12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1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 기부한도 금액 2000만원	

신용카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3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임원 등 할인액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시가의 20%,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일정 기간 내에 재판매 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귀금속 고급시계·가방 등) 2년, 그 외 재화 1년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 리스크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불소급 원칙 적용)
상법 적용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
세법 적용	과거 취득분도 자본거래 인정	과거 취득분 자본거래 불인정
법인 영향	과세이연분 비과세 전환 가능성	과세이연 특례 상실 및 법인세 부과
재무적 결과	세금 부담 없음	법인세 즉시 납부



커리어 관점에서 현재 업무를 재해석하는 법

1. 업무를 '할 일'이 아닌 '경험 단위'로 바라보기

단순히 맡은 일을 끝내는 데 집중하면 업무는 반복적인 소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 해결, 의사결정, 협업 경험처럼 역량 단위로 재해석하면 현재의 업무는 곧 커리어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2. 지금의 역할이 다음 단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기

모든 업무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기획을 위한 기초가 되고,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설득력과 구조화 능력을 키웁니다.

현재의 역할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해하면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3. 성과보다 '이력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을 의식하기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분명한 이력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업했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 경험은 이후 커리어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4. 불만족스러운 업무에서도 배울 점을 찾기

모든 일이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한 커리어 정보입니다. 현재의 불편함을 단순한 스트레스로만 넘기지 말고 자기 이해의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5.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업무가 곧 평생의 커리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험은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거나 좁힐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선택을 하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경험을 최대한 의미 있게 쌓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의미하므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보유기간에 한정하여 거주기간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재산-264, 2025.04.28

Ⅰ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
 - 별도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한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Ⅱ 회 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소수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하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乙)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거주기

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乙)으로 통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거주기간 중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외의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주택의 일부 지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분만 거주요건 적용됨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30, 2025.06.12

Ⅰ 질 의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각각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판정방법

Ⅱ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 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24, 2025.06.26

Ⅰ 질 의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쟁점 물류센터 투자완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일부 면적을 창고업에 사용하는 경우
 - “자산의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대상인지 여부

Ⅰ 회 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이하 ‘창고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3596, 2025.04.28

Ⅰ 질 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

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25.3.14. 전 실시)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만(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하 “쟁점거래”),

- (질의1)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 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거래의 결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 상증법 4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장, 여수 등 고용 산업위기지역 법인세 직권연장 지시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는 중화학 단지로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같은 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 지역 기업인들은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 때문에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고용위기, 고용재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전담반을 파견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방문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해외신탁재산' 의무신고 첫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

해외신탁재산 보유자는 오는 6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 10%를 물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전문가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신탁의무가 생겼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보유재산 신고 업무를 하면서 역외 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해외신탁 탈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 검증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행정안전부, 2026. 1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균형발전

- (지역 활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 ※ (예)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전국공통25% → 수도권10%<비수도권 25%<인구감소지역40%
-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약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 (지역 투자·고용 세제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예시) 10인 고용시 450만원 감면
-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법 50%+조례 25%)
-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발표)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최대 50%: 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1년 한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2026년)
 - *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 (지방 주택취득 지원)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 지역)까지 확대한다.
 - *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150만원 한도
 -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2026년)
- (빈집 정비 촉진)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 최대 50%: 법 25%, 조례 25% / 최대 150만 원 한도
 -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 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② 민생경제 안정

-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 원 한도)을 연장한다.



- (육아휴직 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신설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 (취득세) 면제, (재산세)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③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한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 *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
 -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에는 12% 중과(1주택자 증여는 제외)
 -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 ※ (현행) 4%(일반세율) → (개선) 12%(중과세율)

④ 향후 일정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1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확대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限, 최대 36만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 70만원)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최대 75% (법 50% + 조례 25%)

2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 개인 취득세 감면 신설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최대 50%)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 취득세 최대 50%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Delta 0.05\%$),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례 (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 (~2026년)



3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재산세 50% 감면 (5년간)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 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최대 50% (법 25%, 조례 25% / 최대 150만원 限)

4 신혼부부 · 청년층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100%, 200만원 限, 소형주택 300만원)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감면 연장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행정안전부, 2026. 1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①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26년 상반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 전국 시범 실시 → (이후) 복합민원 추가 확대

-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 담당부서 :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262), 민원제도과(044-205-2455)

②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시) (이용자) “다음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 (AI 정부24+) 긴급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통합포털정책과(044-205-2915)

③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연중)



- 반면,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 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6월)

* (기존) 민주화운동 공적자 → (추가 확대)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

※ 담당부서 :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33),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④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한다. (연중)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준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특히, '충남-대전(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칭)'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⑤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한다. (연중)

- 주민자치회 법제화(「지방자치법 개정」, ~'26.1월)와 함께,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

* (예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숙의-성과관리 쉼 과정 참여 등 / 「가칭주민자치 강화 종합계획」 수립

-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 간소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 투표연령 하향(19→18세), 청구요건 변경(소환대상자→청구권자 총수) 등 「주민소환법」 개정('26년)

** 청구권자 연대서명 기준 완화, 입안지원체계 구축 등 「주민조례발안법」 개정('26년)

※ 담당부서 : 주민자치혁신과(044-205-3433, 3391)

⑥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1월, 연중)

-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연중)
- 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1월)

제도	기존	개선	시행일
지방세 감면 차등 지원	지역 구분없이 동일 감면율 적용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해 인구감소 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차등 감면율* 적용 * (예: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율 40%>25%>10%	'26.1.1.
법인지방 소득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없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 고용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7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제외	근로자 급여 중 '장기근속수당'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 기근속수당은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1인당 월급여액의 10%(36만원 限)	

※ 담당부서 : 재정협력과(044-205-3732), 지방세정책과(044-205-3804)

⑦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1월)

-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범위	기존	개선		시행일
		일반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10만원 이하	100%(전액)	100%(전액)		‘26.1.1.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5%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	33%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⑧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1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25년1조 → '26년1.15조)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 (국비지원) 수도권 3% < 비수도권 5% < 인구감소지역 7%

※ 담당부서 : 민생경제지원과(044-205-3957)

⑨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 (~10월)

- 각종 행·재정적 특례 부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지정 기한('26.10.19.) 내에 재지정한다.



* (현행) 인구 관련 8개 지표 → (개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추가·보완

- 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 「가칭인구활력+ 지역」 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

※ 담당부서 :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0 픽시자전거 제한·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6월)

- 상반기 중에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벌금·과태료)한다.
-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약 63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 담당부서 :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32, 3545)

11 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연중)

-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보강(303개소) 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
-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빈틈없이 관리한다.

※ 담당부서 : 안전개선과(044-205-4220)

12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한다. (~5월, ~10월)

- 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25.6월 기준 185개)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5월)

* 홍수, 호우, 산불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 대피가 불가피한 경우

- 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를 전국에 적용한다.(~10월)

※ 담당부서 :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3),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3)

13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 (연중)

- 먼저,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

해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정책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 담당부서 : 사회연대경제제도과(044-205-3574), 민간협력공동체과(044-205-3422), 기본사회정책과(044-205-3652), 국민참여정책과(044-205-2431),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 국세청, 2026. 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부양가족,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NO!

- ✓ '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년 중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백만 원 발생한 배우자 ⇨ 기본공제 불가능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 1명만 공제 가능

②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 ✓ '25.12.31.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③ 내 집 마련 성공!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실수 없이!

-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5.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 가능

'25.11.30. 1주택을 취득하여 '25.12.31.까지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

- ✓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5.5.1. 기준시가가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④ 나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 ✓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 시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6월에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25.7월에 실손보험금 7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 ⇒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습니다.
-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국세청
정산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

참고 1 공제항목별 상세 요건

기본공제 (소득세법 § 50)

-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하며,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공제금액)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오류 예방을 위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26.1.15.(목)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보한 '25.1~6월 발생분 근로소득과' 25.10월까지 신고한 사업·기타·퇴직·

양도(주식 제외)소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므로 부양가족의 연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95의2)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임차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공제대상 금액)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 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1천만 원×17% (15%) = 170만 원 (150만 원)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 반전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 52 ⑤)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 (차입금)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공제대상 금액)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 원 ~ 2천만 원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 52 ④)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 (차입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공제대상 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만 원 공제)과 합계액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 59의4)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6세 이하자,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금액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1인당 700만 원 한도
- (의료비) 국내 의료기관·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등

*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국외지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공제율)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참고 2 자주 묻는 질문

1-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가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1-2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맞벌이 부부가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함께 제외해야 하는 공제

- | | |
|-----------------------|----------------|
| ① 기본공제 | 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 ② 장애인 추가공제 | ⑥ 의료비 세액공제 |
|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⑦ 교육비 세액공제 |
| ④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포함) | ⑧ 기부금 세액공제 |

*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와 관련한 ②~⑧ 공제 적용 가능

1-3 '25.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25.12.31.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5.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대출명의자)	공제여부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배우자	X
배우자	근로자	X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	○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와 배우자	△*

*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2-2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

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4-1 '25.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 '25.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6년 1월 연말정산 시 '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 '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4-2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국세청, 2026. 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1.21.(수)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후 임 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6년 첫 기업 간담회입니다.
- 김해 수출기업은 '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한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 해당 발언을 계기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❶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및 ❷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❶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❷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이 날 국세청이 발표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참조)



1

선제적 유동성 지원 :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 부여

-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검증 최소화

-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합니다.
 -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이중 과세 해소를 위한 전용 소통창구 마련

-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 등 세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중과세의 주요 쟁점] ①이전가격 과세 ②사용료와 사업소득 구분 ③고정사업장 유무

- 임 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하여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현장 간담회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1. 21.(수) 13:30 ~ 15:00
 - (장 소) 김해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참 석)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김해세무서장,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 19인 등
 - (내 용) 수출기업 애로·건의사항 수집 및 세정지원 안내



참고 2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①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①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12.31. 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②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②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적용대상) ① '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②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적용제외
지원내용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출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착수예정일로부터 1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③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 기업에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④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㉔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대상과 동일
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우선처리	▶ (제도 개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 (혜택) 심사 결과에 따라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가산세 면제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우선처리 서비스) ①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적용 최우선 심사, ② 접수 14일 후 진행상황 유선 안내, ③결과서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심사결과 미리통지



②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우선처리	▶ (제도 개요) 중소기업으로서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 (혜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우선처리 서비스)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신속 처리
--	--

5 해외 과세분 대응 전담 소통창구 개설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①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②세무조사 중 또는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 포함)
상호합의 접수 및 APA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해외에서의 이중과세 관련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안내 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해소 ▶ (신청 방법) 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전화·우편·방문)에 신청 ▶ (지원 내용) ①외국 과세내용이 조세조약상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합의 접수, ②이중과세 위험 사전 예방제도인 APA 안내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행한다

- 국세청, 2026. 1

-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습니다.
-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주)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

* '25.8.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산자부), '25.1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고용부)으로



지정

-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 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 국세청은 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현장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 강화 필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1. 22.(목) 10:40 ~ 11:40
 - (장 소) 포항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참석대상)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등
포항 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13명 등
 - (내 용) 철강기업 애로사항 수집 및 맞춤형 세정지원 논의
- 주요 건의사항
 -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내 철강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강화 및 세제 혜택 확대

참고 2 - 포항철강산업단지 현황

- 단지 개요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 대송면 일대
 - 조성목적 :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육성, 지역 경제 자립기반 강화
 - 단지규모 : 총면적 13,183천㎡
(1단지 3,091천㎡, 2단지 3,225천㎡, 3단지 1,895천㎡, 4단지 1,565천㎡, 청림지구



589천m²)

- 유치업종 : 1차 금속, 조립 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등

□ 설립 경위

- 1단지 : '67.7 사업 지구 지정, 건설교통부 시행, '72년 조성 완료
- 2단지 : '77.8. 건설부 고시로 계획승인, '78년 조성 완료
- 3단지 : '90.2. 포항시 고시로 시행, '90.4. 착공
- 4단지 : '93.4. 포항시와 영일군이 개발 사업요청, '02년 개발계획 승인
- 청림지구 : '72년부터 현 입주기업체에서 조성

참고 3 - 대구지방국세청의 '포항 철강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 전담반을 통한 밀착 세무상담

- (세정지원 전담반) 포항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답변
 - (핫라인 개설)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포항상공회의소」 간 핫라인 개설로 기업의 세무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세정지원 전담반 인계
 - (현장 방문) 세정지원 전담반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매 분기 정기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답변

□ 「숨어있는 공제감면세액 찾아주기」로 기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

- (환급세액 찾아주기) 국세청이 시행 중인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한 「숨어있는 공제·감면세액 찾아주기」를 실시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컨설팅 연계) 주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찾아내어 사전심사·컨설팅을 신청 안내하고,
 - * 연구개발출연금 수령·내일채움공제 납입 등
 - (원스탑 환급)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일괄 인수·처리하여 신속히 환급

□ 오류안내 등 신고 도움을 통한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 (신고오류 안내) 법인세 신고기한 전 제출된 포항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신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착오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신고오류*를 신고기한 내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및 성실신고 지원
 - *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미첨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등

참고 4 - 공제·감면 관련 지원제도 개요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① 제도개요	▶ 중소기업으로서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② 신청기간	▶ 고용·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결정 청구 전에도 가능
③ 혜택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 제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 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④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가능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① 제도개요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 인해주는 제도
② 혜택	▶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 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③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가능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 국세청, 2026. 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23일(금)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 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해외신탁]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국조법 §58③)

-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습니다.

* [해외재산별 최초 신고연도] 해외직접투자 '00년, 해외부동산 '09년, 해외금융계좌 '11년

-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요약 Ⅰ

▶ 제출의무자	거주자는 '25년 연중 하루라도,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있음
▶ 제출서식	「해외신탁명세서*」(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 기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제출기한	거주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제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 과태료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1 -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자료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③-⑥·⑧, 시행령 §98④-⑦
- (취득자금 출처 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9, 시행령 §99
- (과태료 부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1③-④, 시행령 §148⑤-⑦

□ 자료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

◆ 「신탁법」 제2조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등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 제출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국조법 시행령 §98⑤) 예시규정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됨

- (제출서식) 「해외신탁명세서」 등 아래 서식을 제출해야 함

- (해외신탁명세서) ①위탁자 인적사항, ②해외신탁 보유현황, ③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관련자 정보 등) 기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공동위탁자·공동수익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을 작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1

-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해외신탁재산 현황, ②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재산 상세내역, 단가, 평가가액 등) 기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2

-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보유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에 따른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 작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3
-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제6호)
- (재산가액산정) 재산별로 아래와 같은 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함

Ⅰ 재산별 시가 산정 방식 Ⅰ

재산 구분	시가 산정 방식
현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상장주식, 상장채권,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납입금액
기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 시가기준일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에는 ①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②신탁 종료일, 그 외의 경우에는 ③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보완요구) 과세당국은 제출의무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최초 제출의무 발생*
- *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올해부터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한 연도에 대해 해외신탁명세 제출

□ 취득자금 출처 소명

- (과세당국 소명요구) 과세당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고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의무자 소명의무) 소명요구를 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 소명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가 소명된 경우 전액 소명으로 봄
 - 소명요구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



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 (자료 미제출 과태료) 제출의무자가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거짓 제출*하는 경우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 * 과세당국의 명세 제출·보완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포함
- (과태료 부과 예외)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자금출처 미소명 과태료)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미소명·거짓 소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참고 2 - 해외신탁 신고제도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2. 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해외부동산등명세·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

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

2. 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 시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928호, 2023.12.31.>

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제14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23일 (금)	1월 26일 (월)	1월 27일 (화)	1월 28일 (수)	1월 29일 (목)
미 달 러 (USD)	1468.40	1467.20	1442.80	1448.80	1428.60
일 본 엔 (JPY)	927.02	948.88	935.70	950.81	931.32
영 국 파 운 드 (GBP)	1983.44	2007.06	1973.53	2004.27	1971.83
캐 나 다 달 러 (CAD)	1065.29	1071.46	1052.29	1066.20	1053.27
홍 콩 달 러 (HKD)	188.34	188.19	185.04	185.76	183.11
위 안 화 (CNH)	211.26	210.93	207.21	208.18	205.78
유 로 화 (EUR)	1726.62	1744.06	1713.90	1743.05	1707.75
호 주 달 러 (AUD)	1004.46	1016.70	997.41	1014.30	1004.66
싱 가 폴 달 러 (SGD)	1146.61	1155.23	1136.33	1149.57	1131.6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63.47	366.30	363.84	366.55	364.53